

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# 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6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1. .  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## 1. 개정사유

- 가. ‘행정동우회’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이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되는 위법한 무효로 대법원(2012추176, ‘13.5.23)이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
- 나. 보조금 지원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시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사업 중 친목도모·복지증진 사업을 삭제함(안 제2조제3호)
- 나.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시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한 심의 절차를 이행함(안 제3조제1항)
- 다.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 보고 등을 삭제함(안 제3조제2항, 제4조, 제5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- 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”를 “경비를 「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</u></p> <p>제2조 (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)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생략</li> <li>2. 생략</li> <li>3.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 사업</li> <li>4. 생략</li> </ol> <p>제3조 (보조금의 지원) ① 인천광역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<u>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<u>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외의 비용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.</u></p> <p>제4조 (사업계획등의 승인) ① 동우회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동우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동우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 (결산보고 등) ① 시장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동우회에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, 세출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<u>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</u></p> <p>제2조 (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)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(현행와 같음)</li> <li>3. &lt;삭제&gt;</li> <li>4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제3조 (보조금의 지원)----- ----- -----경비를 「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&lt;삭제&gt;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&lt;삭제&gt;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&lt;삭제&gt;</p>

##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p>□ 지방재정법</p> <p>제17조(기부·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·보조·출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</li> <li>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</li> <li>3.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</li> <li>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/ol> <p>② 제1항 단서에 따른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</li> <li>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</li> </ol> <p>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,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개정조례안은 '제3조 보조금의 지원' 조항에 「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」에 따라 일반 사회단체와 동일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써 별도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.

## 4. 작성자

안전행정국 총무과장 권순명